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9/
----------	--------

제출년월일 : 2003. 2 .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됨에 따라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를 취득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면 기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추징 사유가 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였던 자동차를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 함에 따라 단서 조항의 자동차세 추징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나.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경감없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적용코자 개정함.(안 제7조)

다.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확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정리함.(안 제10조제2항)

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동조제2항)

마. 기존의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13조제1항)

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 정리가 필요함.(안 제19조)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시 세 과 ☎ 940-4212
입 안 자	시 세 과 장	석 명 범
	세 정 담 당	이 용 석
	담 당 자	박 세 용

신·구문 대비표

[illegible]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 ----- ----- ----- ----- ----- ----- -----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능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현행	개정(안)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